

『환전지갑 선물하기 서비스』 개정대비표

1. 대상 약관 : 환전지갑 선물하기 서비스 약관
2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약관 적용 여부 : 적용
3. 개정일 : 2026.05.11
4. 개정대비표

현행	개정(안)	비고
<p>제1조~제5조 (생략)</p> <p>제6조</p> <p>① “선물 받기 완료” 한 수령인은 해당 채널에서 외화수령점을 신청하고 영업시간 내(받기 당일포함) 외화 현찰을 수령할 수 있으며, 원화바꾸기(현찰 팔 때 환율 적용) 또는 본인 명의 외화계좌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.(단, 전 채널 합산 1일 미화환산 1만불 범위 내)</p> <p>② 선물받기 금액은 채널별 미수령 잔액 기준으로 1일 미화 환산 1만불까지 가능합니다.</p>	<p>제1조~제5조 (좌동)</p> <p>제6조</p> <p>① “선물 받기 완료” 한 수령인은 해당 채널에서 외화수령점을 신청하고 영업시간 내(받기 당일포함) 외화 현찰을 수령할 수 있으며, 원화바꾸기(현찰 팔 때 환율 적용) 또는 본인 명의 외화계좌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.(단, <u>당행 채널 합산 1일 미화환산 1만불 상당액 이내, 전 제휴사 채널 합산 1일 미화환산 1만불 상당액 이내로, 당행 채널과 제휴사 채널의 한도는 별도 적용됨</u>)</p> <p>② 선물받기 금액은 <u>당행 채널 미수령 잔액 포함 1일 미화 환산 1만불 상당액, 전 제휴사 채널 미수령 잔액 포함 미화환산 1만불 상당액 이내까지 보관</u> 가능합니다.</p>	<p>-전 채널 합산한도를 당행채널과 제휴사채널로 나누어 적용함.</p> <p>-채널별 미수령 잔액기준에서 당행채널과 제휴사 채널 한도로 나누어 적용함.</p>

현행	개정(안)	비고
<p>③ (생략)</p> <p>제7조 생략</p> <p>① 하나머니 서비스 및 제휴사 채널에서 본 서비스 신청 시 1일 환전 거래 가능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(1일 원화 1백만원 및 전 채널 합산 1일 환전 거래 미화환산 1만불 범위 내)</p> <p>② 하나은행 스마트폰뱅킹에서 본 서비스 신청 시 1일 환전 거래 가능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(로그인 환전: 1일 미화환산 1만불 범위 내/비로그인 환전: 1일 원화 1백만원 범위 내)</p> <p>제8조~제9조 (생략)</p>	<p>③ (좌동)</p> <p>제7조 좌동</p> <p>1. 하나머니 서비스 및 제휴사 채널에서 본 서비스 신청 시 환전 거래 가능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(1일 원화 1백만원 (전 제휴사 채널 합산 1일 미화환산 1만불 상당액), 월간 미화환산 1만불 상당액(매월1일~말일), 연간 미화환산 3만불 상당액(1.1~12.31) 이내}</p> <p>2. 하나은행 스마트폰뱅킹에서 본 서비스 신청 시 환전 거래 가능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(1일 미화환산 1만불 상당액, 월간 미화환산 3만불 상당액(매월1일~말일), 연간 미화환산 10만불 상당액(1.1~12.31) 이내}</p> <p>제8조~제9조 (좌동)</p>	<p>- 제휴사채널 월간한도와 연간한도 신설</p> <p>-당행채널 비로그인 환전 삭제, 당행채널 환전 가능한도 기재</p>